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7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용우·모경종·이원택

진선미 • 민병덕 • 김한규

김교흥 • 박정현 • 박주민

백승아 • 백혜련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u>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u>된다.</u>